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30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이인선 · 박충권 · 이종배
김성원 · 고동진 · 안철수
서지영 · 유용원 · 박수영
임이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지방 공교육의 약화와 지역인재 양성·정주 체계의 미비가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2024년 2월부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등이 협력하여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9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지정·운영 중이나,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여건에 맞는 교육발전특구 및 교육혁신지원 선도지역의 지정·운영, 성과관리, 규제특례 및 교육 분야 규제 제외 우선 허용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의 양성 및 정주를 적극 지원하여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발전특구의 지정·운영을 통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주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공교육을 혁신하며, 지역소멸과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발전특구”란 지역 교육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규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완화, 규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거나 규제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제3장제1절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3. “규제제외우선허용”이란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해당 규제의 적용 제외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협약기관”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특구 협약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제8조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의 이행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발전특구(이하 “특구”라 한다)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및 대학 등 지역 내 기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규제특례를 활용한 교육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특구를 적정한 규모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규정한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지역균형발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특구에 규제특례 및 규제제외우선 허용을 적용할 때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

제5조(특구의 지정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특구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3.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특구 운영기획서를 작성할 때 미리 공청회 또는 설명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주민, 학부모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해당 교육감은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협약(이하 “특구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특구 운영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구의 지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구 내 대학 및 기업 등 현

황

3.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와 그 필요성 및 적용 범위

4.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 결과

5. 그 밖에 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 위원회 및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예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특구의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특구의 지정절차와 구체적 지정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특구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① 제5조에 따라 특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이하 “특구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특구지역협의체에는 해당 특구를 관할하는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참여할 수 있다.

③ 특구지역협의체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구 협약안의 작성

2. 특구 협약기관 간 연계·협업 및 발전방향 마련

3. 제8조제1항에 따른 특구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사항 점검

4. 그 밖에 특구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④ 특구지역협의체의 사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둔다.

⑤ 그 밖에 특구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특구 지정의 효과 등)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계획(이하 “특구 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특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한 규제특례 사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규제특례의 내용이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특구 계획의 작성 방법 및 규제특례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구 등의 변경)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이나 특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특구 지정 및 특구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특구의 유효기간 및 지정해제) ① 특구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특구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본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해제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특구 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

되는 경우

2.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의 적용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특구를 운영할 때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구 계획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교육발전특구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특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정해제의 구체적 요건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특구의 지정 및 변경·해제에 관한 사항

3. 특구 협약 및 특구 계획에 관한 사항

4. 특구의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 및 규제 개선에 관한 사항

5. 규제특례의 부여·변경·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6. 특구의 운영 실적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구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특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과 7명 이상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특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재정경제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이거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또는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

2. 지역경제 전문가 또는 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지역인재양성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지방자치 또는 지역균형발전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관련 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특구의 발전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그 밖에 특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특구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전담기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의 지정대상·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특구 운영 전담조직)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구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특구 운영의 성과관리)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공동으로 특구 운영 실적과 성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

정기관의 장 및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제출 방법 및 시기,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규제특례

제1절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제16조(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설립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 반의 편성·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 내 협약기관이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유치원·어린이집 비용지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4조, 제26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총액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에도 불구하고 특구 계획에 따라 교육·보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하여 교육·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유아 및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을 특구 계획에 따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 배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에 관한 특례)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거점형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의 정규수업 외 교육활동(이하 “늘봄학교”라 한다)을 관할 학교 시설 및 학교 밖 시설 등을 이용하여 거점

형태(이하 “거점형 늘봄학교”라 한다)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거점형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시설로서 학교 밖의 시설(이하 “거점형 늘봄센터”라 한다)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④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학교의 장의 업무와 권한, 책임 중 거점형 늘봄학교에 관한 사항을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 책임 및 소속 교직원에 대한 학교의 장의 지도·감독 권한
2.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9에 따른 학교장의 학교 시설·설비·교구의 관리·점검·보수·교체 등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 등의 업무 및 책임
3.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의 안전대책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교육활동 안전대책 점검·확인 등에 대한 학교의 장의 업무 및 책임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5항에 따른 학교의 장의 취업자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확인 등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항에 따른 학교장의 취업자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의 확인 등의 권한과 책임

⑤ 교육감은 거점형 늘봄학교 등 학교 밖에서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의 안전 보장을 위하여 통학버스의 운영 및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조치의 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1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30조에서 같다)의 설립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설립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교육과정, 수업, 학년제, 교과용도서 및 수업연한에 대하여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4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교육과정의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다문화학생 등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문화 학생 등을 위한 교육과정 및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세계화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특구 관할 교육감은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통학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조치로 통학 여건이 열악해진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2조(농어촌 학교 및 소규모 학교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43조제2항 및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어촌학교 전입학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6조, 제30조 및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학년제 편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하거나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다른 학교 종류의 분교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23조(지역 교원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일부 지역 또는 일부 학교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교원의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령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과 관계없이 특구의 일부 지역에서만 인정되는 교원 자격을 신설하고, 교원을 양성하며, 자격 검정 및 수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원 자격의 요건,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원 간의 교차지도(다른 학교급의 학생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허용할 수 있다.
- ⑤ 교육부장관과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교차지도에 참여하는 교원에게 필요한 연수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⑥ 그 밖에 교원의 임용, 전보 제한, 교차지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교원자격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의 자격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에 따른 개방형 공모교장 자격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5조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및 유치원의 교직원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의 장(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를 말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 또는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④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지역교육 혁신과 안정화를 위하여 특구 내 학교에 교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교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제25조(협업교육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특구의 특성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교과 교사와 협약기관 전

문가의 공동 수업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9조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관 전문가의 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기관 전문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통한 수업을 인정할 수 있다.

제26조(산학겸임교사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지역사회 및 산업체 전문가 활용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대체비율과 산학겸임교사의 종류 및 자격기준을 교육규칙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 중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 및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구에 소재한 기업의 임직원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구 내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담당할 수 있다.

③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산학협력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겸임교사에게 교원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특성화고등학교 교원 파견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이하 이 조에

서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의 전문 교원 확보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교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특구를 운영하는 교육감으로부터 전공 교과에 대한 전문성과 교사로서의 자질을 평가받은 자

2.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가진 대학의 교원

제28조(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관한 특례) ①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구 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사증의 발급절차, 체류자격의 변경 및 체류기간의 연장 등에 관한 요건을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특구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7조 및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교육 또는 의무교육 기관의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일반연수의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특구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유

치하는 경우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외국인 유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유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항목과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지역 산업 관련 교육을 위한 특례)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대학”이라 한다)가 지역 산업 관련 캠퍼스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대학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교사 기준 면적 완화가 산업현장의 특수한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며, 그 필요성이 명확히 증명된 경우
2. 완화된 교사 면적이 교육의 질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체 학습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한 경우

②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4조 및 「사립학교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산학 협력 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사시설의 인정 범위 및 이동수업 가능 요건에 관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19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 내에서 대학의 교지 밖에 일부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국유·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특구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특구 계획에 활용되는 토지는 특구 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에서 특구 계획을 적용받는 학교의 신설·증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폐교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할 때 그 재산을 정하여진 기간 내에 특구 계획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특약을 둘 수 있다.

제2절 교육 분야 규제제외우선허용

제31조(교육 분야 규제제외우선허용) ①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3장제1절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및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른 기준·요건·절차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도 및 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우선허용 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하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해당 규제의 존재 여부와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제34조에 따른 교육분야 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제외우선허용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 관계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규제제외우선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신청한 지방자치단

체의 장과 교육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 관련 자료 보완 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이 경우에도 검토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와 사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은 사항(제4항 후단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에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여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제외우선허용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⑨ 교육부장관과 관계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규제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구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규제에 대한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⑩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8항에 따른 규제 관련 법령 정비의 요청

을 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법령 정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 동안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⑪ 그 밖에 규제제외우선허용의 신청 및 세부 심사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규제제외우선허용에 대한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아 추진되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3조(규제제외우선허용의 취소) ①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우선허용
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제34조에 따른 교육분야규제심
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규제제외우선허용을 받은 경
우

2. 제3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제31조제11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규제제외우선허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규제제외우선허용에 따른 제도 및 사업의 추진으
로 공교육 발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의 일시적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규제제외우선허용이 취소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이와 관련된 제도 및 사업 추진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34조(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육분야규제심의위원회(이하 “규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규제제외우선허용의 부여·변경·연장·취소·재심의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규제제외우선허용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

② 규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에 규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35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구의 지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주기,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특구위원회 및 규제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